-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6. 14 (화)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5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5. 6. 22(화) 제12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4. 6. 21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 태영)

가. 제안이유

- 2004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 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.

나. 주요골자

○ 2004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잉 여 금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10,206	7,488	5,537

○ 2004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미수납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10,206	9,760	446

○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7,488	5,389	459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2004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잉 여 금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10,206	7,488	5,537

○ 2004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105억 453만원임

나. 2004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미수납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10,206	9,760	446

○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**102억 672만원**으로 예산액대비 97.1%로 수납액은 **97억 6,071만원**으로 예산액 대비 92.9%이고 미수납액은 **4억 4,601만원**으로 예산액대비 4.2%임

다.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
평창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	7,488	5,389	459

○ 세출부분은
예산현액 133억 3,664만원 대비 56.1%인 **74억 8,841만원**을 지출하였고,
이월액은 **53억 8,915만원**으로 예산현액 대비 57.0%이고,
세출불용액은 **4억 5,907만원**으로 예산현액 대비 4.3%입니다.

라. 검토의견

○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
- 세입예산은 조사결정, 세출예산은 채무확청에 의하여 집행되었고,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.

○ 기타 예산의 집행관리 업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다만, 상수도 급수 수익은 **20억 3,832만원**,
총괄원가는 **51억 1,294만원**이므로
상수도 요금수준의 인상요인 **151%가 발생**한 것은
과제로 남게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 끝.

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172

제출년월일 : 2005. 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4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2004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세입결산액 (수납액) (B)	B/A (%)	세출결산액 (지출액) (C)	C/A (%)	잉 여 금 (D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,536	13,025,677	124.0	7,488,417	71.3	5,537,260	52.7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수 납 액 (C)	C/A (%)	미수납액 (D)	D/A (%)
합 계	**10,504,536**	**13,483,232**	**128.4**	**13,025,677**	**124.0**	**457,555**	**4.4**
현 년 도	10,504,536	10,206,729	97.2	9,760,717	92.9	446,012	4.2
전기미수금		163,232		151,689		11,543	
전기이월액		3,113,271		3,113,271		0	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C/B (%)	이월액 (D)	D/B (%)	불용액 (E)	E/B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10,504,536	13,336,648	7,488,417	56.1	5,389,157	40.4	459,074	3.4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/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5,537,260	440,665	58,259	4,890,233	-	148,103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"관계법령 발췌서 붙임"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

○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

○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

나. 기타사항

○ 2004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보고서(붙임)

○ 2004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(붙임)

관 계 법 령 발 췌 서

지 방 자 치 법

第125條(決算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查委員의 決算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지 방 공 기 업 법

第35條(決算) ①管理者는 每 事業年度末日 現在로서 모든 帳簿를 마감하여 決算을 하여야 한다.

②管理者는 每 事業年度 終了후 2월 이내에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決算을 作成하고 이를 당해年度의 事業報告書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와 함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 및 事業報告書와 기타 書類에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查報告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지방공기업법시행령

제36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"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4.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
5.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
6. 결산부속명세서